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「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·징수규칙」 제9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해태 위반자에게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, 우편반송(수취인불명)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7. 1. 12.

## 강릉시 장



1. 공 고 기 간 : 2017. 1. 12. ~ 2017. 1. 26.(15일간)
2. 공 고 장 소 :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3. 공 고 내 용

1. 처분의 제목		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			
2. 대 상 자	성 명	의료법인대한의료재단(141121-0*****)			
	주 소	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○○로 ○○○-○			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『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』 제2조 위반			
4. 목적부동산		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29-45 나동			
5. 처 분 내 용		과태료 부과금액 : 11,260원( 본세 10,730원 , 가산금 530원)			
6. 법 적 근 거		『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』 제2조, 제11조, 제12조 『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·징수규칙』 제9조			
7. 기 타 (문의처)		기관명	강릉시청 지적과	담당자	홍희정
		주 소	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(홍제동)	전화번호	033-640-5276
팩 스	033-640-4498				